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제5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 [2018-2020]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개요, 방향 및 특징	1
I. 개요	3
1. 수립 배경	3
2. 추진 경과	3
3. 인권증진행동계획 구조 및 의미	4
II. 인권 환경과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방향	7
1. 인권 환경	7
2. 추진 방향	9
3. 추진 방향 체계도	9
III. 제4기와 비교한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특징	10
1. 성과목표 중심 편재	10
2. 성과목표 구체화	11
IV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기본틀	13
1. 비전과 사명	13
2. 4대 전략목표	13
3. 19대 성과목표,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	15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19대 성과목표 세부 내용	17
[성과목표 1]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19
[성과목표 2]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20
[성과목표 3]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22
[성과목표 4]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 강화	23
[성과목표 5]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24
[성과목표 6]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	25
[성과목표 7] 장애인 등의 탈시설(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26
[성과목표 8]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27
[성과목표 9]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28
[성과목표 10]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29
[성과목표 11]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30
[성과목표 12]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32
[성과목표 13] 시민사회 협력 강화	34
[성과목표 14]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	36
[성과목표 15]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38
[성과목표 16]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39
[성과목표 17]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40
[성과목표 18]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41
[성과목표 19]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42
[특별사업]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43
[기획사업] 위원회 역량강화	44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체계도	45
[붙임]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추진단>	57

01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개요, 방향 및 특징

I. 개 요

1 수립 배경

-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인권증진행동계획>이라는 명칭의 3개년 중기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하였고, 제4기(2015-2017) 계획이 2017년 종료됨에 따라, 2018년부터 시작할 새로운 3개년 계획을 입안함
- ▶ 제5기 중기계획이 종료되면 2021년 위원회 20주년을 맞게 되는바, 제5기는 위원회의 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가고 역할을 해야 할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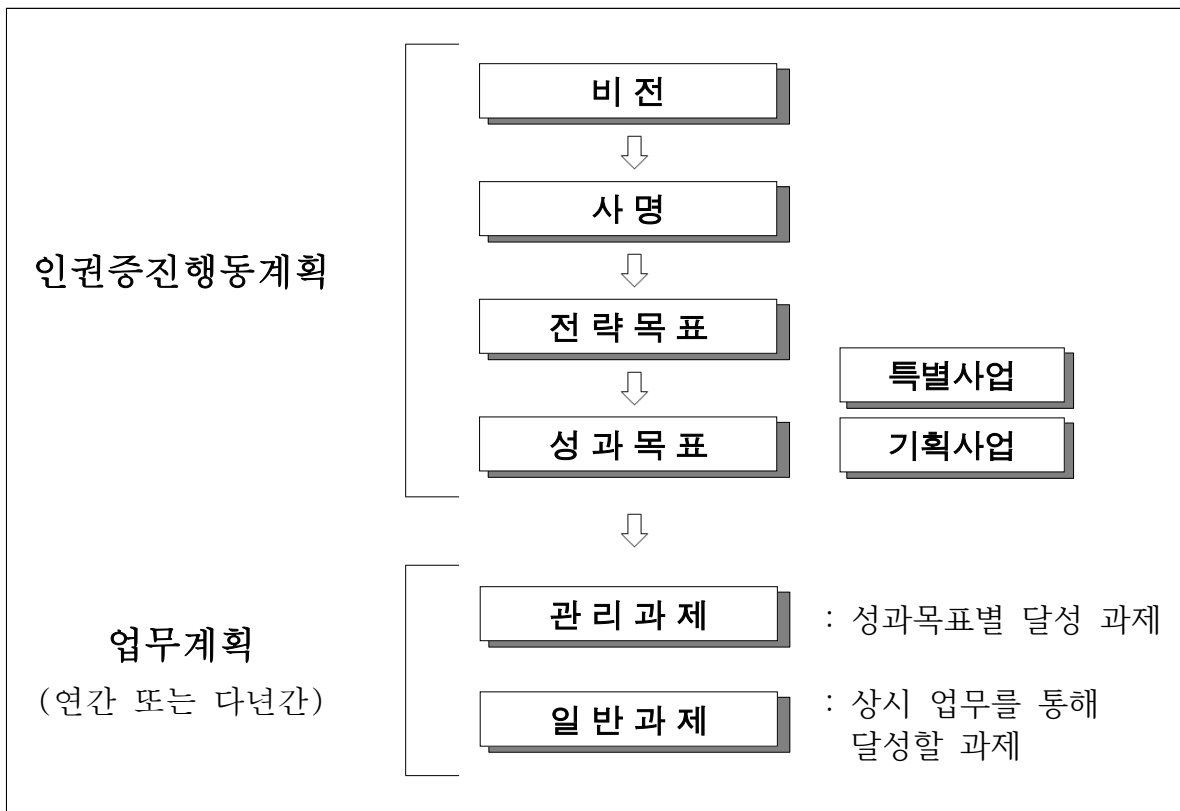
2 추진 경과

- ▶ 2017. 3. 16. 「제5기 인권증진 3개년 계획(2018~2020)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 상임위원회 보고
- ▶ 2017. 3. 27. 위 추진계획 전원위원회 보고
- ▶ 2017. 4.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추진단>(이하 ‘추진단’) 구성 완료
* 추진단장, 추진단원(내부 3, 외부자문 13), 실무지원팀(팀장 1, 팀원 10, 모두 내부), 간사로 구성(추진단 구성은 57쪽 참조)
- ▶ 2017. 4. 28. 제1차 추진단 실무지원팀 회의 개최
- ▶ 2017. 5. 15. 제2차 추진단 실무지원팀 회의 개최
- ▶ 2017. 5. 31. 제1차 추진단 전체회의 개최 및 추진단 외부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 ▶ 2017. 6. 23. 제3차 추진단 실무지원팀 회의 개최
- ▶ 2017. 7. 3. 제2차 추진단 전체회의 개최
- ▶ 2017. 7. 18. 제4차 추진단 실무지원팀 회의 개최
- ▶ 2017. 7. 25. 제3차 추진단 전체회의 개최

- ▶ 2017. 8. 11. 체제도 설명회 개최(각 부서 총괄 담당자 대상), 부서 의견수렴
- ▶ 2017. 8. 25. 제4차 추진단 전체회의 개최
- ▶ 2017. 9. 14. 사무처 부서 의견 수렴(9. 29.까지)
- ▶ 2017. 9. 14. 대국민 의견수렴(홈페이지 게시, 이메일 접수, 10. 10.까지)
- ▶ 2017. 9. 27. 인권시민단체(24개 단체 25명) 간담회 개최
- ▶ 2017. 10. 19. 상임위원회 심의
- ▶ 2017. 11. 13. 전원위원회 심의 · 의결

3 인권증진행동계획 구조 및 의미

구조



■ 용어 정의

▶ 비전

- 위원회가 추구하는 이상

※ 2006. 3. 13. 비전선포식을 갖고 제1차 인권증진행동계획 발표 후 지속적으로 유지

▶ 사명

- 제5기에서 위원회가 추구할 방향

▶ 전략목표

- 위원회의 비전과 제5기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추구할 가치

▶ 성과목표

- 추상적인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주제이고,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목표로서, 위원회의 연간 단위 업무계획을 견인하는 기능

▶ 관리과제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과제로, 연간 또는 다년간(제5기 기간 내) 수행

▶ 일반과제

- 성과목표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위원회 비전을 위해 수행하는 상시적·일상적 과제(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등)

▶ 특별사업

- 성과목표 수준으로, 정치·사회적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특정 주제의 사업

▶ 기획사업

- 성과목표 수준으로, 특정 시기 및 목표 하에 그 목적 수행을 위하여 전개될 필요가 있는 사업의 집합으로, 주로 사무처 운영 등에 관한 내용

■ 성과목표와 관리과제의 운영상 의미

▶ 성과목표는 전략목표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는 수정 불가

※ 불가피한 경우,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모두 수정 가능

▶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에서 사전에 제시된 관리과제(이하 ‘사전 제시

관리과제’)는 총 58개로, ‘확정’과 ‘시’의 성격을 모두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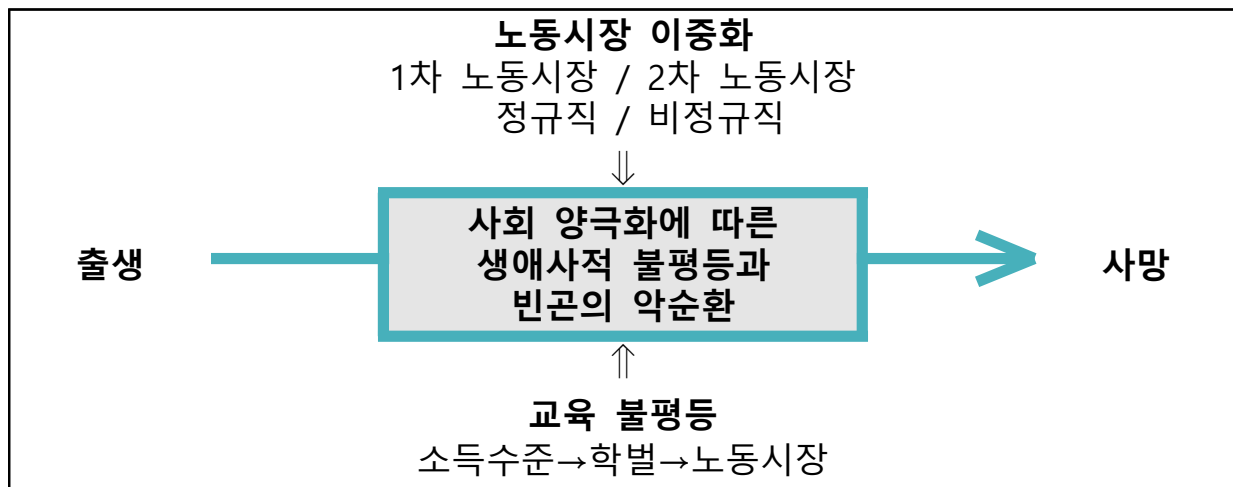
- 사전 제시 관리과제는 3년간 일정한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여 사전에 확정된 주제임과 동시에, 해당 성과목표의 취지를 구체화함으로써 연간 업무계획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예시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
- 따라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자유롭게 추가 가능
 - * 성과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주제인 한, 관리과제 추가는 자유로우며, 연간 단위와 다년 단위 모두 가능(연간업무계획은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

Ⅱ. 인권 환경과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방향

1 인권 환경

새로운 위기의 시대 - 양극화의 구조화

- 지난 5년은 1990년대 말 IMF 위기에 대한 경쟁과 효율성 중심의 대응이 초래한 부정적 효과가 크게 심화된 시기
- 성장 정체, 양극화, 혐오 범죄 증가, 저출산, 노인자살 급증 등 사회 위기를 보여주는 여러 징후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



■ 교육 양극화

- ▶ 소득에 따른 사교육 투자의 차이, 대학에 대한 인식 격차로 학벌에 의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 심화

■ 노동시장 양극화

- ▶ IMF 위기 후 1차 노동시장(대기업과 국가·공공기관의 정규직)과 2차 노동시장(대기업과 국가·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등)으로 분화되었고, 1차 노동시장은 규모가 축소되고 경직성은 강화되는 반면,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고용 안정성과 임금이 낮은 2차 노동시장은 규모가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확대

■ 청년 세대 위기

- ▶ IMF 위기 이후 2001년 이후부터 초저출산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모든 사회 위기가 얹히고설켜 만들어 낸 결과적 징후로, 주로 청년 세대의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
- ▶ 여성은 결혼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경력이 일단 단절되면 재취업이 매우 힘들거나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로 내몰리며,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은 부족하고 남성 육아 휴직 사용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고, 여성도 육아휴직급여의 임금 대체율이 낮은데다 기업의 협조가 부족해 최소한으로만 사용하는 등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렵고, 열악한 일자리 상황과 폭등하는 주거비로 인해 한국의 젊은이들은 결혼과 출산을 최대한 늦추거나 포기

■ 노인빈곤

- ▶ 현재 대한민국 노인의 50%는 빈곤층
- ▶ 청년과 중장년 기간 동안 2차 노동시장에서 탈출하지 못한 개인은 빈곤 노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1차 노동시장 노동자라 하더라도 의료 등 사회보장체계 미비로 은퇴 후 갑작스럽게 빈곤층 전락 가능성 상존

■ 노인자살

- ▶ 2015년 인구 전체 자살 사망률은 10만명당 26.5명인 반면, 65세 이상 노인 자살 사망률은 58.6명으로 더욱 심각
 - ▶ 노년층에서도 특히 70세를 넘기면서 자살 사망률은 더욱 높아지는데, 우리 사회 노년의 삶이 급속한 자존감 상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임을 반영
- * 자살사망률 : 65~69세 37.1명, 70~74세 54.9명, 75~79세 72.5명, 80세 이상 83.7명

■ 양극화 위기에 대한 인권적 대응

- ▶ 노동시장 내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교육제도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절대빈곤을 제로를 향한 초석 마련
- ▶ 청년들의 기본적 노동권 보장,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연 근무제 등이 보장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득 및 건강권 보장
- ▶ 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 세대 간 갈등해소, 자존감 고양 방안 마련

■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

- ▶ 이주민, 여성, 장애인, 아동, 성소수자 및 각종 보호시설 생활인 등 인권 취약 계층을 위한 세밀한 인권보호망 강구
-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 확산에 적극적 대응

추진 배경

교육 및 노동시장 양극화, 생애사적 불평등과 빈곤의 악순환

핵심 방향

노동시장 내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교육제도를 둘러싼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절대빈곤 제로를 향한 초석 마련

핵심 방향

2대 목표

사회권 강화(노동인권,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빈곤퇴치)

평등권 증진(차별금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

Ⅲ. 제4기와 비교한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특징

1 성과목표 중심 편재

■ 제4기 : 전략목표 중심의 편재

- ▶ 제4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성과목표는 모두 20개이고, 자유권과 사회권을 핵심 성과목표로 삼으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강화를 추가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구조
- ▶ 첫 번째 전략목표의 2대 성과목표는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으로, 각각 자유권과 사회권을 대표
- ▶ 이 둘을 기본축으로 하여, ① 아동·청소년·노인, ② 여성, ③ 이주민·재외동포, 그리고 ④ 장애인 등 4대 취약계층 보호라는 주제를 두 번째 전략목표의 4대 성과목표로 설정
- ▶ 각 전략목표 별 성과목표에 하위 번호를 부여(예. I-1, II-1)함으로써 성과목표의 독자성 보다는 전략목표를 더 강조

■ 제5기 : 성과목표 중심의 편재

- ▶ 위원회가 향후 3년간 집중해야 할 추진 방향을 명료히 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한국사회 인권현실과 과제에 대한 공공의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 마련
- ▶ 19개 성과목표에 1번부터 19번까지 고유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전담 실무자는 목표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를 높일 수 있고, 일반 시민들도 위원회 성과목표에 대한 직관적 이해가 가능
- ▶ 전략목표는 추상적 가치를 언어로 표현한 슬로건으로, 큰 줄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 추진과정에서는 성과목표가 더 강조될 필요가 있음을 반영한 변화

■ 제4기 : 포괄적이고 추상적 주제

- ▶ 첫 번째 전략목표의 첫 2개 성과목표인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과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은 추상성이 매우 높아 거의 모든 위원회 정책업무가 이 두 개의 성과목표로 포괄될 가능성
- ▶ 성과목표와 그에 따른 관리과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종합적이어서, 정책·제도개선 전담 부서의 경우 일상 업무의 사실상 전부가 성과목표에 종속되어 운영됨으로써, 인권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 제5기 : 성과목표를 구체화하여 업무의 선택과 집중 추구

- ▶ 위원회 업무의 백화점식 나열이 아닌,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택과 집중의 방식으로 선별하여 제시
- ▶ 자유권/사회권/취약계층/교육과 협력/국제인권/복합주제 등 인권 범주 내에 포괄되는 모든 주제를 나열하는 방식은 지양
- ▶ 자유권 주제는 일상적 일반과제인 진정사건 조사로 다루도록 하고, <성과목표 9>와 같이,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 법령으로 초점을 이동하여 3년 간 특히 개정(또는 폐지)해야 할 법령을 발굴하여 위원회 역량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도록 설계
- ▶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을 입안하게 된 배경이 되는 인권현안(양극화의 구조화 및 생애사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위원회 업무 권한에 속한 핵심 주제를 선별하여 제시
- ▶ 첫 번째와 두 번째 성과목표를 각각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와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으로 설정하는 등 성과목표의 구체화를 위해 노력
- ▶ 취약계층의 경우도 젠더폭력, 탈시설 및 접근권 등 좀 더 구체적 이슈에 집중하도록 설계

- ▶ 인권증진행동계획에서 제시한 성과목표가 위원회 업무 전부를 포괄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성과목표가 설정한 주제에 포섭되지 않더라도 위원회 일상 업무(일반과제)로 추진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업무의 성과목표 종속성을 완화

IV.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의 기본틀

1 비전과 사명

- 비전 : 우리 위원회가 추구하는 이상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 사명 : 제5기 업무 추진 방향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2 4대 전략목표

위원회의 비전과 제5기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핵심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함축한 슬로건으로, 2대 핵심목표와 2개 추가목표로 구성

- 2대 핵심 전략목표

I.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II.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 ▶ ‘사회권 강화’와 ‘평등권 증진’의 가치를 표현
- ▶ 구조화된 양극화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인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2대 핵심 가치이자 목표
- ▶ 노동인권,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역량 강화(empowerment)를 도모하는 등 이들 권리 보장이 취약한 사회구성원들에 집중되도록 설계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이 실현되는 인권사회 구축을 지향

- ▶ ‘노인빈곤은 한 개인이 생애 전체를 통해 지속적인 불평등에 노출된 결과적 징후’라는 관점 채택

※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 행동계획(MIPAA)」은, 노인인권 문제는 ‘현재의 노인’ 문제가 아닌, 노년으로 접어들기 이전 세대부터 지속되는 ‘생애 전체’의 문제라는 관점에 기초하고 있음. 즉, MIPAA는 소득보장과 경제활동 지원은 노년 이전부터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건강권 문제도 ‘현재’ 노인들에 한정되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노년에 접어들도록’ 훨씬 이전 세대부터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추가 전략목표

Ⅲ.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Ⅳ.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 ▶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 인권 개념이 급속히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여전히 어려운 주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한편에서는 남용되거나, 과잉으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기도 하는 혼란이 존재
 - 인권은 일상생활 속에서 실현되고 이해되는 ‘생활규범’으로서 정착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권교육의 목표를 인권의 생활화로 설정하며,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의 한 요소로 자리매김
 - 국내적으로는 자치단체 지방인권기구, 국제적으로는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인권체계와 지방인권 체계의 가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
- ▶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 미래지향적 가치로서 인권 개념의 확장을 도모
 - 북한인권 개선,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정보인권 보호, 생명·안전·환경·문화, 군인권 등의 새로운 인권 개념의 사회적 확산과 공론화를 목표

[전략목표 I]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1.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2.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3.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4.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 강화
5.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전략목표 II]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6.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7. 장애인 등의 탈시설(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8.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9.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10.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전략목표 III]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11.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12.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13. 시민사회 협력 강화
14.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전략목표 IV]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15.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16.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17.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18.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19.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특별사업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기획사업

위원회 역량강화

02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19대 성과목표 세부 내용

추진배경

- ▶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등에 노출된 2차 노동시장규모가 커지는 반면, 고임금과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은 규모가 확대되기보다는 정체되거나 작아지고 있고, 채용 또한 경력직보다는 신규 공채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청년 시기 2차 노동시장에서 출발한 노동자들은 은퇴시까지 2차 노동시장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청년빈곤이 노년빈곤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
- ▶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 간의 간극 해소는 정부의 고용정책이 주안점을 두어야 하는 과제이고, 위원회는 이들 2차 노동시장 노동자들이 은퇴 후 노인빈곤층을 구성하는 주요 집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들에게 좀 더 높은 임금, 좀 더 나은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인빈곤을 완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집중할 필요

추진방향

- ▶ 노동인권 전반을 포괄하지만,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직업집단(비정규직, 간접·특수고용직, 가사노동직 등) 및 노동인권 취약집단(여성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노인 노동자 등)에 특히 주목하여, 이들이 기존 노동인권 보호 제도로부터 충분히 보호받도록 하며, 나아가 인권보호가 미흡한 제도가 발견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 권고

※ 이주 노동자의 경우 <성과목표 8>에서 별도로 포괄

[사전 제시 관리과제]

- 1.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및 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 1.2.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초단시간노동, 감정노동 등 대응)
- 1.3.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

추진배경

- ▶ 학력에 의한 차별 및 출신학교 서열화가 만연해 있어, 좋은 학교 출신이 좀 더 좋은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은 소득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성적도 사교육비 지출액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수년째 보이는 등 학교 성적에 따라 대학과 양질의 일자리가 수직적으로 결정되는 악순환 심화
- ▶ 위원회가 강제자율학습, 진술서나 반성문 강요, 두발단속, 소지품 검사, 휴대폰 검열,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제한 등 학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양하게 무시되거나 침해됐던 ‘학교 공동체 내 아동 인권’의 중요성을 국가기관 최초로 제기하면서, 여러 교육자치단체가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등 그동안 위원회는 학교 내 아동인권 보장의 제도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여전히 학생인권 주제를 둘러싼 갈등이 상존
- ▶ 홈스쿨링, 대안학교 아동, 가정밖 아동 등 제도권 학교 바깥에 있는 소위 ‘학교밖 아동’의 경우, 그 규모나 인권상황 등 기본적인 실태파악이 시급한 상황

추진방향

- ▶ 어느 아동도 공교육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으며, 제도권 밖 아동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공정하고 충분히 제공되며, 나아가 모든 아동이 전인격적이고 자유로운 성장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도록 정책·제도를 개선
- ▶ 학교 제도를 중심으로 그 안과 밖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아동인권’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
- ▶ 과도한 사교육 시장 등 아동의 놀 권리(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의 권리 등)를 제한하는 관습과 제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사전 제시 관리과제]

- 2.1. 학교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 2.2. 학교 내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
- 2.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 2.4. 장애인 교육권 보장

추진배경

- ▶ 한국의 건강보험은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보장률과 공공재원 비율 등에서 OECD 평균에 많이 못 미친다는 비판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종종 제기되는 상황
-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사업’이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사업’도 여전히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높고 대상자가 제한적인 한계
- ▶ 절대빈곤층 비율이 7%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2007년 3.8%를 정점으로 꾸준히 하락하여 2012년 이후부터는 3%를 넘지 않고 있고 2016년에는 2.9%에 불과
- ▶ 2016년 65세 노인의 기대여명 20.9년 중 질병 없는 건강한 상태인 기간은 9.1년으로, 기대여명 절반 이상 동안 질병을 앓는 것으로 조사

추진방향

- ▶ 빈곤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은 복지욕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절박한 욕구이고, 재난적 의료비 등 과도한 의료비는 노인빈곤의 큰 원인이라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보호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주안점
- ▶ 아동과 노인의 의료비 지출, 특히 이들의 중증질환 의료비 지출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집중

[사전 제시 관리과제]

- 3.1.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
- 3.2.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

추진배경

- ▶ 2015년 노인 1인 가구는 전체의 6.4%를 차지하고 그 비율이 점차 상승중인바, 노인은 돌봄이 필요한 열악한 건강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려할 만한 수준
- ▶ 최근 청년 주거빈곤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
- ▶ 청년 주거빈곤층이 노년 주거빈곤층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
- ▶ 재개발 과정에서의 강제퇴거가 행정대집행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각종 폭력 등 인권침해 다수 발생

추진방향

- ▶ 청년·노인 등 저소득 1인가구 및 비주택 주거자의 주거권 실태를 ‘인간다운 삶’ 기준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1인가구 및 비주택 거주 가구의 주거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마련
- ▶ 공공주택에서의 강제퇴거 실태, 재개발 과정에서의 인권친화적 행정대집행 방안 등에 집중

[사전 제시 관리과제]

- 4.1.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 4.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
- 4.3.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

추진배경

- ▶ 절대빈곤은 그 자체가 인권침해이므로 인권국가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고, 우리 사회 노인층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
- ▶ 유엔은 2015년 채택한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에서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제시하고, 그 중 제1목표를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로 설정
- ▶ 대한민국 정부도 환경부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SDGs 이행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중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음에도, 소득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등의 기준으로 인하여 수급자로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대규모 비수급 빈곤층의 문제, 수급층이라 하더라도 지원 수준이 낮아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힘든 문제 발생

추진방향

- ▶ 생애사적 불평등의 악순환 관점에서 노인빈곤을 이해하고, 관련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
- ▶ SDGs 제1목표에 부합하는 지표 개발을 위한 정부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한 국제 협력 도모

[사전 제시 관리과제]

- 5.1.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노인빈곤)
- 5.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 5.3.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

■ 추진배경

- ▶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지나치게 과소대표 되며, 특정 비정규 질 낮은 일자리에 편중되어 있고,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후 이러한 과소대표성은 더욱 심각해지는 등 구조적 성차별이 의심되는 상황
- ▶ 구조적 성차별 등 여성 일자리를 둘러싼 복합적 문제의 결과로 남녀 임금격차가 매우 높음
- ▶ SNS나 인터넷 등에서의 성폭력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및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등 여성대상 폭력이 우려할 만한 수준
- ▶ 아울러, 역사적·구조적 차별을 등한시한 채 성별간 형식적 동일시를 성평등으로 오인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혐오표현도 급증

■ 추진방향

- ▶ 여성의 정치적·사회적 저대표성 개선(중앙·지자체 관리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직위에서 여성 확대)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
- ▶ 채용, 승진 및 근로조건 등에서 여성차별(임신·육아·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에 집중
- ▶ 성희롱 등 위원회 조사대상에 대한 적극적 대응 외에도, 여성 및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일반, 즉 젠더폭력의 위해성에 대한 여론 환기

[사전 제시 관리과제]

- 6.1.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 6.2.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 6.3.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

추진배경

- ▶ 장애인, 아동, 노숙인에 대한 시설 입소 비율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시설 생활 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주거와 고용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대안 프로그램이 부실하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할 정책이 부족
- ▶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상습폭행, 학대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장애인 학대 피해자를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나 고용 등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부족

추진방향

- ▶ 시설 수용이 아닌 지역공동체에서 더불어 함께 하는 생활이 인권의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탈시설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대안 연구 및 개선(장애인, 노숙인, 아동 등)
- ▶ 정보, 문화, 의료, 교통 등 ‘서비스 향유’와 관련한 접근권 문제는 장애인, 아동, 저소득층 등 모든 취약계층의 문제
- ▶ 재난·안전관리 매뉴얼 등에 장애인을 고려한 규정이 없거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실효적인 대응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각종 위험상황에 대비한 장애인 대상 사전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부족

[사전 제시 관리과제]

- 7.1.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
- 7.2.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7.3.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
- 7.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한계 등 모니터링 강화

추진배경

- ▶ 2016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약 205만 명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결혼이주 등이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자녀 세대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난민 인정률은 여전히 낮음
- ▶ 그동안 위원회는 고용허가제 문제 등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의 인권 문제에 집중해 왔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으나 여성, 아동, 난민 등 이주민 내에서도 더 취약한 계층 인권 문제에 좀 더 집중할 필요
- ▶ 이주민 등 외국인이나 난민은 기초적인 의료서비스,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정보 제공, 자녀 출생 등록 등 생존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거나 불균등하게 받고 있는 문제

추진방향

- ▶ 이주노동자 일반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지속하되, 아동, 난민, 무국적자, 장기구금(보호) 외국인 등 사각지대 이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의제 발굴에 더욱 노력
- ▶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서 적극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역량강화 기반 제공

[사전 제시 관리과제]

- 8.1.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외국인 등) 인권보호 강화
- 8.2.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 8.3.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

추진배경

- ▶ 경찰·검찰(수사 및 공소), 법원(재판), 교정기구(형집행) 등을 포괄하는 형사사법제도는 인권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영역이며, 이 중 수사와 교정행정은 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인권개선이 이루어진 영역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인권침해 발생
- ▶ 형사사법제도 중 공소 제기 및 유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여전히 사법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등)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추진방향

- ▶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자유에 대한 권리, 그리고 노동3권 행사와 관련한 형사처벌 조항(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조항) 등, 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는 법령에 대한 문제점 종합적인 검토, 개선 방안 등
- ▶ 형사사법 제도 내에 관행적 또는 제도적인 불공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사법약자의 인권보호 수준을 제고

※ 큰 진전이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수사 및 형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도 여전히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상적인 감시체계(진정·직권·방문조사)는 철저히 유지

[사전 제시 관리과제]

- 9.1.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 9.2. 사법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인권 보호 방안 마련

추진배경

- ▶ 비정규직,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직업군이 당하는 고용영역에서의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는 타 사건에 비해 시간과 인력 소요가 매우 크고, 차별행위 여부 판단을 위한 논리구성이 복잡해, 한정된 인력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는데 한계
- ▶ 방문조사는 구금·보호시설의 인권침해를 사전적·예방적·선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핵심 권한으로, 인력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실시할 필요성 제기
- ▶ 노인의 경우 노령으로 진입하면서 은퇴와 독거, 소득 수준 하락 등에 따른 자존감 하락으로 자살률이 급증하고, 가정 내 노인학대 등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정책·제도 개선이 시급

추진방향

- ▶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사건 조사 매뉴얼 마련, 조사관 역량강화, 진정사건 조사 절차 개선
- ▶ 방문조사 횟수, 범위 등을 대폭 확대하고, 방문조사 매뉴얼 마련
 - * 방문조사의 목적을 정책·제도 개선이 아닌, 예방적 효과 창출로 설정
- ▶ <성과목표 13>과 연계하여, 각 인권보호전문기관(아동, 노인, 장애인)과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학대 문제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사전 제시 관리과제]

- 10.1.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사건 조사)
- 10.2.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
- 10.3.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마련

추진배경

- ▶ 지난 16년간 위원회 활동의 큰 성과중 하나는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인바, 국가·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많은 분야에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에도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양적 성장과 공감대 형성을 넘어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인권교육의 제도화 및 전문화를 위해 2012년 『인권교육중장기계획(2013-2022)』를 수립하고 추진 중
- ▶ 그러나, 인권교육 제도화 및 체계화의 핵심 기초인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이 답보 상태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각 시민사회단체와의 역할 분담이 모호하고 인권강사 등 전문적 역량 개발이 단기적 수요 대응에 그치는 등의 한계에 직면
- ▶ 한편, 위원회의 2010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 이후, 청소년 인권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기는 등, 그동안 위원회는 ‘노동인권’ 개념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여전히 노동인권 취약계층은 기존 노동인권 보호 제도조차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역량강화에 한계

추진방향

- ▶ 인권교육의 핵심은 인권지식의 하향식 단순 전달이 아닌,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권 개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교육 자체를 권리로 인지하며,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권이 생활규범으로 인식되고 발현됨으로써 개인들 스스로 인권보장의 주체로서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돕는 것
- ▶ 사회적 약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인지하고, 인권보장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 ▶ 인권교육을 인권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로 정립하고,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을 포함하여, 기존 인권교육 업무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 업무 재구성 및 제도 개선을 도모하며,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전사회적으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초를 확립
- ▶ 노동인권 취약계층 및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교육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

[사전 제시 관리과제]

- 11.1.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및 홍보 체계 구축
- 11.2.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 11.3. 노동인권교육 강화

■ 추진배경

- ▶ 지방인권기구는 국가인권기구와 더불어 일국의 인권 보장 시스템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 ▶ 17개 광역지자체 중 16개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모두 인권기구 설립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 지방인권기구들 중 일부는 외곽·임시 조직 형태를 띠거나, 예산이 부족하여 활동 동력이 약하거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등의 한계
- ▶ 또한 광역자치단체 인권기구들이 상호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교류를 도모하고는 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활성화가 더디고, 조례라는 형식적 요건 외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자체 역량에만 기대기는 어려운 상황
- ▶ 지방인권기구의 의의는, 자유권 보다는 사회권과 참정권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내에서 인권가치 확산과 협력에 있음. 지방 단위라고 하여 자유권의 중요성이 약해지지 않는 않지만 자유권 침해의 핵심 국가기관인 군, 수사기관, 정보기관 및 구금시설은 국가인권기구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최일선에 있다는 점에서 사회권 실현의 매우 중요한 주체라는 점에 주목
 - * 국가인권기구와 지방인권기구는 대등한 협력자이므로 상호 협의 하에 역할(조사, 인권교육 등)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설정하고, 보편적 국제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하고 구현하기 위해, 자신들의 감시 하에 있는 중앙 및 지방 입법·집행기구들이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고 실천할 필요
 - * 주어진 법령 구조와 제도를 적절히 활용한 인권 실현 방법을 찾음과 동시에 만일 제도들이 인권 실현에 방해가 된다면 상호 협력하에 제·개정을 유도할 필요
 - * 지방인권기구의 인권침해 조사 권한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2017. 6. 의견표명을 통해 “산하 행정기관 및 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보조금)을 받는 민간 복지시설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사 및 구제조치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음

■ 추진방향

- ▶ 자치단체 인권조례 및 지방인권기구 내실화를 지원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대한민국 인권보장 시스템의 완성을 도모
- ▶ 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과 유지를 권장하고 지지
- ▶ 지방인권기구들이 실질적 기능(인권교육, 홍보, 협력, 침해구제 등)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인적·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도록 자치단체를 독려(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 권한 활용)
- ▶ 지방인권기구들간의 정기적 협의체가 구성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
- ▶ 국가인권기구로서 위원회가 이들 지방인권기구 협의체에 동등한 협력적 파트너로 참여
 - * 캐나다인권기구협의회(Canadian Association of Statutory Human Rights Agencies; CASHRA)는 국가인권기구인 ‘캐나다인권위원회’와 11개 지방인권기구들간의 연합체로서, 매년 대규모 인권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상시적인 사무총장급 및 위원장급 대화 채널을 운영하는 등 캐나다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상설 협의체로서 기능

[사전 제시 관리과제]

- 12.1.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12.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

추진배경

- ▶ 인권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시민사회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협력하며, 정책·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이미 중요한 행위자로서 자리매김하였고 유엔 등 국제기구 내에서도 그 실질적 역할을 인정
- ▶ 한국 사회에서도 위원회 설립의 중요한 동력이었고, 여전히 인권개선을 위한 적극적이고 긍정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으나, 위원회는 그 업무 수립과 수행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확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음
- ▶ 한편, 2017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됨으로써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더불어 학대에 노출된 주요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방안이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들 공공업무 수행 민간기관과 위원회의 협력 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태
- ▶ 인권시민사회단체도 수도권 편중이 심한 문제가 있으나,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단체가 활발히 활동 중

추진방향

- ▶ 위원회 연간업무 수립에서부터 구체적인 집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시민사회와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 ▶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친족 간 학대 등 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닌 다양한 인권침해에 개입할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정책·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위원회가 이들 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력 체계를 상시화 함으로써 아동,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개선을 도모

- ▶ 인권사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인권시민사회단체 협력을 강화하고 내실화 도모

[사전 제시 관리과제]

- 13.1.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강화
- 13.2.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 13.3. 지역사회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추진배경

- ▶ 원칙적으로 정부간 기구인 유엔은 그동안 각국의 국가인권기구들의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실제로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정도에서만 그 공식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등 제한적 역할만 부여
- ▶ 그러나 2016년 개방형고령화실무그룹(OEWGA)이 국가인권기구의 공식 발언권을 인정하였고,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도 국가인권기구들에게 공식 참여권을 보장하는 움직임이 커지는 등 향후 수년 내 각종 유엔 인권기구들에서의 국가인권기구의 위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인권조약기구는 UPR 시스템 도입 초기 다소 역할이 모호했으나, 최근 새로운 인권주제를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국가보고서 심의에 적극 임하면서 인권보장의 핵심 체계로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
- ▶ 인권이사회 산하 특별절차는 강제실종이나 고문, 비사법적 처형 등 각종 자유권 침해에 대한 즉각적 대응이라는 설립 초기의 목표를 넘어, 새로운 인권주제에 대한 선도적 대응과 연구 및 국제여론 환기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
- ▶ 한편, 고령화 시대 노인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바, OEWGA를 중심으로 노인인권조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한국에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설치를 의결하여 2018년 설립 예정이고, 위원회 주관으로 아셈노인인권콘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
- ▶ 위원회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가 설치한 고령화실무그룹 의장국을 수임중이고, 2018년 6월 그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연장 여부를 논의할 예정

■ 추진방향

- ▶ 조약기구의 국가보고서 심의에 적극 대처하고, 그 권고 내용이 국내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 강화
- ▶ 국제인권기준에 친화적인 사법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가 추구하는 아시아인권재판소 구성 노력에 적극 협조
- ▶ 특별절차의 경우, 대한민국이 상시초청 국가이므로, 국내 주요 인권이슈를 책임지는 특별보고관 등의 국내 방문을 적극 권장하고 협력하며, 공식 방문 외에도 비공식 방문을 주선하는 등 상시 교류를 활성화하고, 한국 인권상황과 밀접한, 새로운 인권이슈를 선도하는 특별절차의 경우 보고서 국내 소개 및 분석, 여론 환기 등 적극적 협력

※ 한국의 새로운 인권상황 관련 주요 특별절차(2010년 이후) 예 : 법 및 법집행에서의 여성차별(2010), 기업과 인권(2011), 민주적이고 평등한 국제 질서(2011), 진실, 정의, 보상 및 재발방지(2011), 안전하고,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의 향유(2012), 노인인권(2013), 장애인인권(2014), 프라이버시 권리(2015),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2016)

[사전 제시 관리과제]

- 14.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
- 14.2. 특별절차 협력 강화
- 14.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
- 14.4.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 기구 역할 확립
- 14.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

추진배경

- ▶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우려와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핵 위기는 더욱 고조
- ▶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으로 인한 탈북이 지속(2016년 누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3만 명 돌파)되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등 분단으로 인한 시급한 인권현안은 미해결 상태
- ▶ 유엔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남북간 대화 및 교류 등 접촉이 필요함을 강조(유엔 북한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 등)

추진방향

- ▶ 북한 내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강제 수단과 대화를 다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꾸준히 의견표명
- ▶ 국내 정착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사전 제시 관리과제]

- 15.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 15.2.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추진배경

- ▶ 2006년 이후 지속된 위원회의 노력으로 기업의 인권경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크게 확산되었으나, 시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노동권 보장 등 구체적 분야에서의 내재화는 여전히 미흡하고, 해외 진출 다국적 기업의 경우도 인권침해 사례 다수 발견
- ▶ 2017. 10. 6. 발표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제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후 최종견해에서 동 위원회는 한국 기업의 국내외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기업의 인권실천 및 점검(due diligence)을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공적 원조를 할 경우 인권 침해 여부를 고려할 것 등을 권고

추진방향

- ▶ 2016년 「기업과 인권 NAP 권고」가 적시에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권경영을 제도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도모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엔의 다국적 기업 등에 관한 개방형 실무그룹 등과의 협력을 강화

[사전 제시 관리과제]

- 16.1.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 16.2.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 16.3.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추진배경

- ▶ 2016년 3월 <프라이버시 권리 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첫 업무계획서에서 새로운 정보인권 환경을 우려하면서 프라이버시 개념을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 강조

* 특별보고관이 예시한 새로운 환경 : ① 국가별 · 시대별, 프라이버시 개념 상이, ② 국가보다 기업에 의한 정보수집이 훨씬 더 많고 이들 정보를 개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제공(SNS)하는 시대, ③ Open Data/Big Data의 사회적 효용과 프라이버시가 충돌하는 시대, ④ 테러방지 등의 목적으로 국가에 의한 전방위적인 감시가 전세계적으로 자행되는 시대, ⑤ 모욕과 혐오를 조장하는 표현이 급증한 시대, ⑥ 유전자 정보의 시대, ⑦ 생체통계학(biometrics)의 시대

추진방향

- ▶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권리에 대한 연구 및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인권 침해 관련 규제를 체계적으로 검토

[사전 제시 관리과제]

- 17.1.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개념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
- 17.2.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추진배경

- ▶ 최근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대규모로 위협하는 상황은 홍수, 가뭄, 태풍 등과 같은 전통적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 영역이 커지면서 산업생산물 및 기업 활동 그 자체로부터, 그리고 조류독감과 같이 인간 활동의 부수적 효과로부터, 그리고 메르스 등 새로운 형태의 전염 질환에 의해서도 발생
- ▶ 문화의 권리는 노동, 교육, 건강, 주거, 빈곤, 사회복지 등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천명한 권리 목록의 마지막 퍼즐로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 ▶ 한편, 동 규약 위원회는 2016년 「성(性)과 재생산건강권에 관한 일반논평 제22호」를 발표함으로써, 그 동안 학술적 토론과 시민사회단체 운동에 머물러 있던 ‘성과 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를 국제인권체계의 핵심 이슈로 격상시킴으로써, 여성인권과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

추진방향

- ▶ 국제사회에서도 새로운 주제인 만큼 구체적인 정책 ·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일정 수준의 노력(실태조사, 연구용역, 교육 및 홍보 등)과 직원 역량강화 등 향후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확립에 집중

[사전 제시 관리과제]

- 18.1.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제고
- 18.2.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화
- 18.3.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색
- 18.4. 성(性)과 생식건강권 보장 강화

추진배경

- ▶ 분단국가라는 안보의 특수성 등을 이유로 군 장병은 아직도 시민이 아닌 특별한 집단으로만 규정되고, 이런 환경에서 징집·입대부터 전역에 이르기까지 각종 악습과 인권침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
- ▶ 정부와 각 군 차원에서 다각적 노력과 큰 개선이 있었으나, 개선의 효과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어 혁신적인 제도 등을 통한 권리보호 필요성 증대
- ▶ 한편, 여군 수가 증가하고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군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임신·출산과 관련한 근무여건 보장 미흡, 성폭력 피해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발생

추진방향

- ▶ 국가인권위원회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만큼, 동 과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실시하고, 설치 이후에도 조기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조사 대폭 확대, 여군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주제를 충실히 검토
- ▶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편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사전 제시 관리과제]

- 19.1.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
- 19.2. 군영창제도 근본적 해결(방문조사 강화, 제도 개선, 폐지 등)
- 19.3. 여군 인권보호 강화
- 19.4.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역거부 등)

■ 추진배경

- ▶ 여성, 외국인, 성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확산
- ▶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혐오표현은 단순히 표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물리적 위해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규제 또는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물리적 위해를 선동하는 혐오표현이나, 인종차별적 혐오표현 등에 대해서는 여러 국가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등 강하게 규제
- ▶ 혐오표현이라는 주제는 위원회의 교육·협력, 정책·제도개선 및 조사 등 위원회의 모든 권한과 기능이 종합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복합주제이므로 별도의 조직 구성 필요

■ 추진방향

- ▶ 3년 내 가시적인 성과를 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시 조직 구성
- ▶ 혐오표현의 개념과 위원회의 역할(조사권 등) 연구 및 정책·제도개선 권고
 - 혐오표현의 개념을 정의·범주화하고, 형사처벌 대상과 위원회 조사 등 연성적 규제 대상 등을 명료화 하는 가이드라인 개발
 - 「혐오표현 종합보고서」 등 국내 혐오표현 실태에 대한 종합적 연구 및 조사 수행
 - 온라인상 혐오표현 유통 방지를 위한 연구(주요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역할 등)
 - * 유럽연합(EU)은 2017. 9. 28. 유튜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등 거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불법적인 혐오표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미삭제, 방치 등)하는 경우 규제할 것임을 천명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발표
- ▶ 위원회 조사권한 내에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사
- ▶ 홍보 및 교육,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협력
- ▶ 차별금지법 관련 업무 포함

■ 추진배경

- ▶ 제5기 중기계획이 종료되면 2021년 위원회 20주년을 맞게 되는바, 지난 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성숙한 조직역량과 위상을 갖추는 노력 필요
- ▶ 새정부가 인권국가를 지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위원회 미래전략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

■ 추진방향

- ▶ 기본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및 헌법기관화 추진
- ▶ 조직 · 인사 · 예산 자율성 강화(법 개정 추진)
- ▶ 업무 개선 및 권고 이행 모니터링 체계 개선
-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판단지침 제시(종류 : 침해, 차별, 사회권)
- ▶ 직원 역량교육 내실화

03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체계도

[전략목표 I]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1.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1.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및 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1.2.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초단시간노동, 감정노동 등 대응) 1.3.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
2.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2.1. 학교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2.2. 학교 내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 2.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2.4. 장애인 교육권 보장
3.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접근권 강화	3.1.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 3.2.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
4.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 강화	4.1.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4.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 4.3.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
5.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5.1.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노인빈곤) 5.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5.3.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

[전략목표 Ⅱ]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6.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6.1.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6.2.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6.3.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
7. 장애인 등의 탈시설 (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7.1.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 7.2.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7.3.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 7.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한계 등 모니터링 강화
8.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8.1.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외국인 등) 인권보호 강화 8.2.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8.3.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
9.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9.1.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9.2. 사법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인권 보호 방안 마련
10.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10.1.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사건 조사) 10.2.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 10.3.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마련

[전략목표 Ⅲ]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11.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11.1.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및 홍보 체계 구축 11.2.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11.3. 노동인권교육 강화
12.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12.1.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2.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
13. 시민사회 협력 강화	13.1.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강화 13.2.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13.3. 지역사회 인권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14.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14.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 14.2. 특별절차 협력 강화 14.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 14.4.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 기구 역할 확립 14.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

[전략목표 IV]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15.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15.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15.2.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16.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16.1.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16.2.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16.3.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17.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17.1.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개념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 17.2.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18.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18.1.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제고 18.2.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화 18.3.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색 18.4. 성(性)과 생식건강권 보장 강화
19.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19.1.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 19.2. 군영창제도 근본적 해결(방문조사 강화, 제도 개선, 폐지 등) 19.3. 여군 인권보호 강화 19.4.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역거부 등)

특별사업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프로젝트팀 운영] • 교육, 협력, 홍보, 정책·제도개선 통합 • 차별금지법 대응
기획사업	
위원회 역량강화	• 기본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 및 헌법기관화 추진 • 조직·인사·예산 자율성 강화(법 개정 추진) • 권고 이행 모니터링 체계 등 업무 개선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판단지침 (차별판단지침, 사회권침해판단지침) • 직원 역량교육 내실화

제5기 인권증진 행동계획 체계도

-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사명 : 양극화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실현한다

전략목표	I. 사회권 강화와 인간다운 삶의 보장	II. 차별해소를 통한 실질적 평등사회 구현	III. 지속가능한 인권 거버넌스 구축	IV. 인권의 확장과 다원화
성과목표	①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1.1.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 및 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 해소 1.2. 여성 노동인권 보호(가사노동, 초단시간 노동, 감정노동 등 대응) 1.3. 미래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를 대비한 노동인권 강화 방안 마련 ②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2.1. 학교밖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 2.2. 학교 내 아동 인권 보호 방안 마련 2.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2.4. 장애인 교육권 보장 ③ 의료체계 공공성 및 취약계층 의료 접근권 강화 3.1. 희귀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접근권 강화 3.2. 노인의료비 근본적 해결을 통한 노년의 행복추구권 보장 ④ 주거 빈곤층의 주거권 보장 강화 4.1. 비주택 주거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4.2. 청년 및 1인가구 주거권 실태 점검 및 대안 마련 4.3. 재개발 과정에서 거주민 권리 보호 강화 ⑤ 절대빈곤 계층의 생존권 보장 5.1. 생애사적 빈곤의 악순환 실태 파악 및 개선 방안 모색(노인빈곤) 5.2. 절대빈곤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5.3. SDGs 목표 1(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대응	⑥ 성차별 해소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권리 구제 6.1. 성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6.2. 성희롱 및 성폭력 등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6.3.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개선 ⑦ 장애인 등의 탈시설(사회복귀) 및 정보 등 접근성 제고 7.1. 탈시설화 제도 종합적 검토·개선 7.2. 장애인의 접근성(교통, 문화, 정보, 관광 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7.3. 장애인 생존권 보장 관련 정책제도 개선 강화 7.4.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효과와 한계 등 모니터링 강화 ⑧ 이주민·난민의 인권 보호 8.1. 사각지대 이주민(여성, 아동, 장기구금 외국인 등) 인권보호 강화 8.2. 난민 및 무국적자 인권보호 강화 8.3.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강화 ⑨ 형사사법제도에서의 인권보호와 평등권 실현 9.1. 인권관련 법제도 종합적 검토 및 개선 방안 마련 9.2. 사법약자(아동, 노인, 장애인, 이주민, 저소득층) 인권 보호 방안 마련 ⑩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방적 보호 강화 10.1. 고용형태 등 고용차별시정 강화(진정 사건 조사) 10.2. 방문조사(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강화 10.3. 노인학대 및 노인자살 문제에 대한 인권적 대응 방안 마련	⑪ 인권교육 제도화 및 전문화 11.1. 인권의 생활화를 위한 새로운 인권교육 및 홍보 체계 구축 11.2. 인권교육 전문성 강화 11.3. 노동인권교육 강화 ⑫ 지방인권기구 협력 강화 12.1. 정보공유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2.2. 국가·지방인권기구 협의체 운영 및 지원 ⑬ 시민사회 협력 강화 13.1. 시민사회단체 연례회의 개최 등 협력 강화 13.2. 아동, 노인, 장애인 권리보호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협력 강화 13.3. 지역사회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강화 ⑭ 국제인권기구 협력 및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14.1. 조약기구 대응 활동 강화 14.2. 특별절차 협력 강화 14.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사법부 협력 강화, 미가입 조약 대응 등) 14.4. 아셈글로벌에이징센터 중장기 발전 방안 마련 및 노인인권 증진 전담 기구 역할 확립 14.5.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아동인권모니터링	⑮ 북한인권 문제의 다원적 대응 15.1. 국내 북한이탈주민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 강화 15.2. 국제공조와 대화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⑯ 기업의 인권경영 확산 및 증진 16.1. 인권경영 법제도 기반 조성 16.2. 인권경영 공감대 형성 및 확산 16.3. 인권경영 추진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⑰ 변화하는 시대의 정보인권 보호 17.1. 새로운 시대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개념 연구 및 대응 방안 마련 17.2. 정보인권 침해 규제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⑱ 생명·안전, 환경 및 문화의 권리 강화 18.1. 저소득층 문화접근권 및 문화향유권 제고 18.2. 환경권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기반 강화 18.3. 긴급 재난 상황시 인권보호 방안 모색 18.4. 성(性)과 생식건강권 보장 강화 ⑲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정착 19.1. 군인권보호관제 도입 및 정착 19.2. 군영창제도 근본적 해결(방문조사 강화, 제도 개선, 폐지 등) 19.3. 여군 인권보호 강화 19.4. 대체복무제도 종합적 검토(양심적 병역 거부 등)
특별사업	협오효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프로젝트팀 : 교육, 협력, 홍보, 정책·제도개선 통합, 차별금지법 대응)			
기획사업	위원회 역량강화 (개헌 및 헌법기관화 추진 / 조직·인사·예산 자율성 강화 / 권고 이행 모니터링 체계 등 업무개선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판단지침 제시 / 직원 역량교육 내실화)			

제4기 인권증진 행동계획(2015-2017) 체계도

- 비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사명: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한다.

전략 목표	I.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II.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III. 인권가치의 사회적 확산	IV. 인권 공론화와 협력 강화
핵심 추진 방향	표현의 자유 보장과 사회안전망 개선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 권리구제	지역사회의 인권역량 강화와 인권교육의 법적 보장	국내외 주요 인권의제에 능동적 대응
성과 목표	1. 신체 및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보장 2. 사회안전망 개선을 통한 사회권 보장 3.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및 이행 점검 4.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착 5. 인권평가제도 도입	1. 아동·청소년·노인의 인권 증진 2.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 증진 3. 성차별·성희롱 시정 및 여성인권 증진 4. 이주민·재외동포 인권 보장 5. 인권사각지대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1. 지역주민의 위원회 접근성 강화 및 인권가치의 전국적 확산 2. 인권교육법 제정 등 인권교육 정책 기능의 확대 3.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보급 및 활용 강화 4.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영 5. 인권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1. 노동 양극화 및 소외 해소 2. 기업 인권경영의 확산 및 증진 3. 고도정보사회에서의 정보인권 증진 4. 새로운 인권의제의 연구 및 개발 5. 국내외 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특별 사업	북한인권 개선			
기획 사업	국가인권위원회 15년사 발간			

- 추진기반(국가인권위원회의 역량 강화): 1.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2. 위원회 구성원의 인권전문성 강화

제3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12-2014) 체계도

● 비전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 사명 :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한다.

전략 목표	I.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II.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III.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IV.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V. 차별시정 강화
성과 목표	1. 사회권의 확대·증진 2. 자유권의 보장·강화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4. 군인권 증진과 병역제도 개선 5.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제도 기반구축 6. 인권지수 개발	1. 다문화사회 이주민인권증진 2. 노인인권 향상 3. 아동·청소년 인권향상 4.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	1. 기획조사 확대 2. 조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3. 인권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4.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증진	1.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2. 인권교육 강화 및 확산 3. 인권 콘텐츠 개발 등 인권친화 적 문화 조성	1. 장애인차별시정 강화 2. 성차별 시정 강화 3. 연령·학력 등으로 인한 차 별개선 4.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5. 소수자 인권 향상 6. 종교에 의한 차별 개선
특별 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기획 사업	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2. 정보인권 증진		

제2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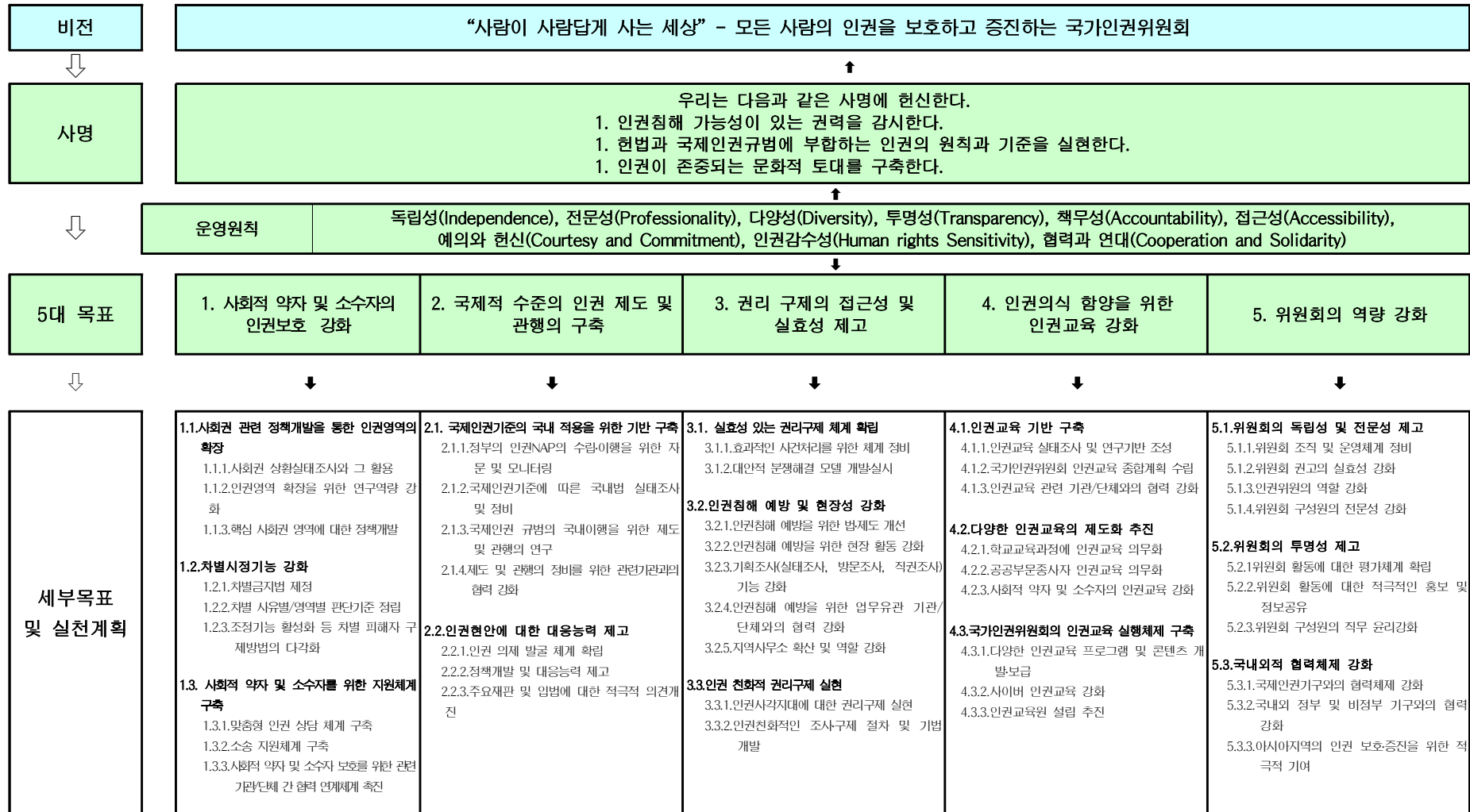
- 비전(vision)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사명(Mission) :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를 실현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증진행동계획(2009~2011) 전략목표

전략 목표	I.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II. 아동 노인 인권 향상	III. 경제적 약자의 인권 향상	IV. 다문화 사회의 인권 증진	V. 사회적 약자의 차별 시정 강화
성과 목표	1-1. 신체의 자유 및 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강화	2-1. 학생 인권 개선	3-1 사회권 국제기준 준수 인프라 구축	4-1. 다문화 정책의 인권지향성 강화	5-1. 차별금지법 제정(폐지)
	사형제 폐지 입법화	차별금지 및 학교폭력 예방	사회권 지표 개발(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위한 토대 구축)	인권 친화적 다문화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차별금지법 제정
	1-2. 표현의 자유 보장	2-2. 취약 계층 청소년 인권 개선	3-2. 빈곤 계층 인권 보장	4-2.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5-2. 고용에 있어서 차별 개선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문화 정착 방안	청소년 최저임금 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제 개선	이주노동자협약 가입	사회적 약자 고용차별 시정 방안
	1-3. 양심, 사상 및 종교의 자유	2-3. 스포츠 선수의 인권 보호	3-3. 비정규직 인권 보호	4-3. 결혼이주여성 인권증진	5-3. 장애인차별 개선
	1-3.(변경)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강화		3-3.(변경) 노동취약계층 인권개선		
	공공영역에서의 특정 종교행위 강요 개선	학생선수 학습권 침해 개선	비정규직 차별개선 방안 마련	인신매매적 국제결혼 금지 방안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적 이행 촉진
	1-4. 정보인권 증진	2-4. 노인 인권보호		4-4. 다문화 가정의 아동 인권보장	5-4.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개인정보 보호 방안	노인보호시설 수용인 인권 개선		인종·문화 소수자로서의 다문화 가정 아동 권리 보장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5-5. 여성 인권 보호
					여성인권 사각지대 개선
특별 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기획 사업	위원회 설립 10주년 기획사업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인권위 역량 강화) : 1. 인권위 독립성 강화, 2.국내외 교류협력 강화, 3. 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제1기 인권증진행동계획(2006~2008) 체계도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 추진단>

구 분		인 원	이름 및 소속(가나다순)
추진단장		1	상임위원(이경숙)
추진단원	내부	3	인권위원(김기중, 한위수) 사무총장
	외부 자문	13	권건보(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희(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박숙경(경희대학교 후마니티스 칼리지 교수) 이성기(성심여대 법학과 교수) 신혜수(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위원) 오경석(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오완호(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이동익(신부, 前가톨릭중앙의료원장) 이명숙(법률사무소 나우리 대표변호사) 이상수(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정경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 조경배(순천향대학교 법학과 교수) 조홍식(서울대학교 법학과 교수)
실무 지원팀	팀장	1	이석준(기획조정관)
	팀원	10	권혁장(대구인권사무소장) 김원규(차별조사과 서기관) 김향규(침해조사과장) 박병수(인권정책과 사무관) 박진남(비서실 사무관) 손두진(조사총괄과 사무관) 신홍주(소통협력팀장) 윤채완(아동청소년인권과장) 정호균(장애정책팀장) 조영호(인권정책과장)
간사		2	기획재정담당관, 기획혁신팀장